제338회 남양주시의회(제2차 정례회)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[김동훈 의원 대표발의]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2. .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김동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○「국민체육진흥법」개정에 따라 남양주시체육회가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· 남양주시 공유재산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)

- 남양주시체육회의 공유재산 대부, 사용·수익 및 관리 위탁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11. 13 ~ 2024. 11. 19.(6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체육회가 남양주시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

「국민체육진흥법」의 개정에 근거하여 남양주시체육회가 공유재산의 대부, 사용·수익을 가능하게 하고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, 본 조례 개정으로 남양주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다만 공유재산의 사용 및 활용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리 ·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
붙임1 관계법령

☑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3. 26.]

붙임2 **비용추계 관련 자료**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○ 제11조(공유재산의 사용 등)

① 시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- 남양주시 체육회의 사무실 임차료를 「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0조에 의거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편성하고 있으나, 공유재산을 관련 조례에 의거 무상 사용할 경우 세출 예산의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기존에 대부, 사용·수익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을 신규로 무상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할 경우 운영비로서 지원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 세출 예산의 감소가 예상되나,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해당 관리기관(부서)의 수익이 감소하여 세입 예산의 감소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됨

※ 남양주시체육회 공유재산 사용료(사무실 임차료) 약 19,000천원 (1년 / 365일 기준)

☞ 세입의 감소가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함

4. 작성자

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유 형 식